

고 시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-57호

청진구역 제12~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-27호(2009.5.22)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, 종로구고시 제2009-81호(2009.12.31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종로구고시 제2010-12호(2010.3.26)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된 청진동 92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12~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10년 10월 1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청진구역 제12~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3. 사업시행면적 : 14,225.3㎡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 : 지엘피에프브이원(주) 대표이사 김재연
 - 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삼공빌딩 1101호
5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10.9.29.
6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
 - 가. 변경주요내용
 - 1) 대지조성비감액(공통부분 배분액 제외)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지분을 증가
 - 2) 토지수용 및 협의매수에 따른 소유권 변경(10건)
7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(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☎731-1421~4). 끝.